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4 – 06호

2025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1월 11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 56시간)

○ 보　　수 : 월 561,680원(고용·산재보험 필수 가입)

※ 참여자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38명

○ 모집분야 : 붙임 참고

○ 공고기간 : 2024. 11 .11.(월) ~ 11. 22.(금)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4. 11 .18.(월) ~ 11. 2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능력개발지원팀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 필수서류 】

① 참여신청서[서식1] (희망직무 기재 필수) 1부.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확인사항 유무 작성) 1부.

※ 장애등록여부(장애인증명서必), 장기요양등급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근로 가능 여부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의사진단서 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서식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회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table>
<tr><th>구 분</th><th>증 빙 서 류</th></tr>
<tr><td>자격증소지자</td><td>-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등</td></tr>
<tr><td>졸업예정자</td><td>-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td></tr>
<tr><td>여성가장</td><td>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첨 부 서 류</th></tr>
<tr><td>공통사항</td><td colspan="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td></tr>
<tr><td rowspan="10">선택사항</td><td>부모 부양시</td><td>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td></tr>
<tr><td>가출 . 행방불명</td><td>실종신고서</td></tr>
<tr><td>장애</td><td>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td></tr>
<tr><td>질병으로 요양 중</td><td>의사의 진단서</td></tr>
<tr><td>군복무</td><td>복무확인서</td></tr>
<tr><td>학교 재학</td><td>재학증명서</td></tr>
<tr><td>교도소 입소</td><td>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td></tr>
<tr><td>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td><td>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td></tr>
<tr><td>이혼소송 제기</td><td>이혼소송확인서</td></tr>
<tr><td>기타 가족 생계 부양</td><td>통·반장의 확인서(검토)</td></tr>
</table>
</td></tr>
<tr><td>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
사업 대상자</td><td>-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td></tr>
</table>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 ※ 최근 3년(22~24년) 이내 사용가능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상, 시·군·구청장상)

[여성가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ex. 2024. 12. 31.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 사업자로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최과하여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인 자(1960.1.2.이전 출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1년 만근 시에도 퇴직금 미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 24세 이하(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 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www.suwonrehab.or.kr>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능력개발지원팀으로 (☎.031-548-5639,5699) 문의 바랍니다.

붙임 모집 직무 및 선발인원 1부. 끝.

붙임 **(복지일자리-참여형)모집 직무 및 선발인원**

※ 지원요건 및 우대조건 필수 확인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단위: 명)

연번	수행직무	지원요건 및 우대조건	선발인원	비 고
계			38	
1	디앤디케어	-	2	- 주간이용시설 케어보조
2	급식지원	-	4	- 식당 배식 보조
3	기부물품관리	-	3	- 후원물품 정리 및 배치
4	기타-서비스직종(이미용)	이미용 자격증 우대	1	- 미용실 운영 관리
5	사무보조	컴퓨터 자격증 우대	1	- 사무관련 보조활동
6	사서보조	-	1	- 도서관 책 정리 및 소독
7	생활체육 보조코치	체육관련 자격증 우대	1	- 수영프로그램 보조강사
8	세탁보조	-	1	- 수건 및 세탁관련 보조
9	스포츠 이용시설안내	-	4	- 체력단련실 이용기구 안내 - 수영장 탈의실 관리
10	우편물분류	-	1	- 우편물, 택배물품 정리 등
11	카페보조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1	- 카페근무
12	프로그램 보조	-	1	- 프로그램활동 보조
13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	1	- 유선을 통한 어르신 확인
14	화단관리	-	1	- 화단 및 식물재배기 관리
15	환경정리	-	6	- 환경 미화 및 정리
16	휠체어 관리	-	1	- 휠체어 정리 및 소독
17	문화예술	-	8	- 샌드아트, ESG아트활동